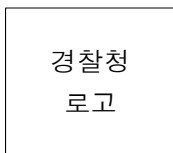


교통안전교육 확인증(75세 이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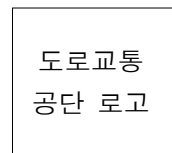
제 호		
교육 이수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	이수일자	
차기 교육기간 (운전면허 갱신기간)	년 1월 1일 ~ 년 12월 31일	

위의 사람에 대하여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

도로교통공단 이사장



유의사항

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운전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73조제5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(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) 이내에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